

축산차량 등록대상이 **추가 확대**됩니다.

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를 통해
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활용 및 확산방지에 기여



축산차량등록 확대

확대, 19개 유형



기존(14개 유형) + **조사료 · 톱밥 · 쌀겨 · 깔짚** 운반차량,
예방접종 목적 출입차량

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(예정) : '15.12.23일 → 신규 대상차량은 '16.3.23일까지 등록

기존, 14개 유형

가축 · 원유 · 알 · 동물약품 · 사료 · 가축분뇨 · 왕겨 · 퇴비를 운반하거나,
진료 · 인공수정 · 컨설팅 · 시료채취 · 방역 · 기계수리를 위하여 **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**

차량등록제 운영센터 : ☎1544-3925



농림축산식품부
Ministry of Agriculture, Food and Rural Affairs



농림축산검역본부
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



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
Livestock Health Control Association

축산차량 등록제란?

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**차량무선인식장치(GPS단말기)**를 **장착하여 축산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·관리**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선진수준의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



1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등록대상 차량이란?

- 가축·원유·알·동물약품·사료·**조사료**·가축분뇨·퇴비·왕겨·**쌀겨**·**톱밥**·**갈짚**을 운반하거나 진료·**예방접종**·인공수정·컨설팅·시료채취·방역·기계수리를 위하여 **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**이며, 새로 추가되는 **조사료·쌀겨·톱밥·갈짚** 운반 차량과 **예방접종** 목적 출입차량은 **2016. 3. 23일까지 해당 시·군·구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(GPS)를 장착**해야합니다.

－ 축산관계시설 : 가축사육시설, 도축장 및 집유장, 식용란 수집판매업소, 사료공장, 가축시장, 가축검정기관, 종축장, 부화장, 비료공장, 가축분뇨 처리업체

2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

벌칙

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**
 -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**
 -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
 -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·제거한 운전자



과태료

-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**
 -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
 -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



3 장애시 조치요령

- “차량무선인식장치 장애 시 「차량등록제 운영센터 : 1544-3925」에 즉시 신고합니다.”
- “차량무선인식장치 장애 시 축산시설을 불가피하게 방문한 경우, **출입 사실을 신고**해야 합니다.”

